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5. 3. .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2월 15일 구청장제출
- 나. 회부일자 : 1995년 2월 17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31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1995년 3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재무국장 박충희)

-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공포 ('94. 9. 29 대통령령 제14391호)에 따라 구유재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범위와 그 기간, 납부이자율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구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매각토록 규정함.
 - 구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매각토록 규정함.
 - 구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매각토록 규정함.

3.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조대현)

개정이유가 '94. 9. 29 대통령령 제14391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단서가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을 일시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영등포구 구유재산 조례 제21조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9
----------	-----

제출년월일 : 1995.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공포('94. 9. 29 대통령령 제14391호)에 따라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범위와 그 기간, 납부이자율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구유재산의 매각 대금을 10년 이내에 연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매각토록 규정함(안 제21조 제1항)
 -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주택개량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시
- 구유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매각토록 규정함(안 제21조 제2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에 따른 철거주민 주거용으로 매각시
 - '81. 4. 30 이전 점유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양성화된 건물 점유지로 2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 4. 30 이전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양성화된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 다만, 다수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는 일단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하는 토지
 -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등을 국가유공자에게 매각시

- 구유재산 매각대금을 5년이내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매각토록 규정함(안 제21조 제3항)
 -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게 매각하는 경우
 -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시
 -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유허가를 받은 개인 점유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 관광진흥법의 개발사업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시
 -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될 재산을 주민에게 매각시
 - 지방자치단체 이관업무에 제공된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시
 - 구청장이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 점유 사용할 경우 재산명도일과 대금 납부기간 연장시
 - 기타 공익사업 지원용 매각 재산으로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잠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교육청에 매각 할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②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8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2. 조례 제38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3.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2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게 매각할 때
3. 구청장이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할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매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안)
<p>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8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 제95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에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발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가계 대출금리를 준용한다.</p>	<p>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때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교육청에 매각할 때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발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p>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영 제95조제2항제8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조례 제38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p>③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영 제95조제2항제2호·제6호·제10호·제11호·제16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게 매각할 때 구청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할 때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